

문수로 라티에르 673 무순위(사후) 1차 입주자모집공고



※

단지 주요정보

(분양문의) 052-256-8253

주택유형		규제지역여부		무순위(사후) 자격요건		
민영		비규제지역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부산광역시,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없음		최초 당첨자발표일(2026.04.29.)부터 6개월		없음		미적용

구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무순위(사후) 접수일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026.04.10.(금)	2026.05.21.(목)	2026.05.26.(화)	2026.05.29.(금)	2026.06.01.(월)	2026.06.04.(목)

1

공통 유의사항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5.10.3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본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무순위(사후) 청약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약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 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국내거주로 불인정되어 청약신청 불가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청약홈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으로만 신청이 가능(현장접수 불가)하며,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방식만 가능합니다. 반드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 인증서	금융 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KB국민 인증서	토스 인증서	신한 인증서	카카오 인증서
APT잔여세대 (무순위 / 임의공급 / 불법행위재공급)	O		X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의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2 단지 유의사항

■ 본 주택의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6.05.21.(목)이며(청약자격 요건 중 나이, 거주요건 등의 판단기준일), 주택관리번호는 2026910122입니다.
 ■ 본 주택은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부산광역시,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공급합니다(외국인 청약불가).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6.04.10.(금)이며 최초 주택관리번호는 2026000121이므로,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주택공급가격 및 단지여건, 유의사항 등의 세부 내용은 반드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금회 공급 주택형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시 1순위 및 2순위 청약 마감된 주택형으로,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추가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미계약 세대를 공급하는 것으로서 본 무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의 입주자로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향후 청약 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 분	무순위(사후)접수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 정	2026.05.26.(화)	2026.05.29.(금)	2026.06.01.(월)	2026.06.04.(목)
방 법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불가	■ (PC·모바일) 청약홈	■ 사업주체 건본주택 (주소 :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1129-13)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청약 신청은 1인 1건만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합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울산광역시 남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전매제한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의 당첨자발표일(2026.04.29)로부터 6개월 적용됩니다.

3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 공급위치 :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673-1번지 외 14필지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6층, 지상 최고 35층, 2개동 총 199세대 중 잔여 12세대

■ 입주시기 : 2029년 08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m², 세대)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잔여세대수	잔여세대 동·호 내역	
					동	호
2026910122	01	084.8550B	84B	12세대	102동	2203, 2303, 2402, 2403, 2502, 2503, 2602, 2603, 2702, 2703, 2802, 2903
	합 계			12세대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세대, 원)

약식 표기	동·호	층	세대 수	공급금액				계약금(5%)		중도금(60%)						잔금(35%)
								1차	2차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차(10%)	6차(10%)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계	계약시	계약후 30일 이내	2026.07.29	2026.11.30	2027.03.29	2028.03.29	2028.06.29	2028.09.29	입주지정일
84B	102동 2호	23~24층	1	387,352,900	499,647,100	-	887,000,000	5,000,000	39,350,000	88,700,000	88,700,000	88,700,000	88,700,000	88,700,000	88,700,000	310,450,000
		25~26층	2	388,663,000	501,337,000	-	890,000,000	5,000,000	39,500,000	89,000,000	89,000,000	89,000,000	89,000,000	89,000,000	89,000,000	311,500,000
		27~29층	2	390,846,500	504,153,500	-	895,000,000	5,000,000	39,750,000	89,500,000	89,500,000	89,500,000	89,500,000	89,500,000	89,500,000	313,250,000
	102동 3호	22~24층	3	396,086,900	510,913,100	-	907,000,000	5,000,000	40,350,000	90,700,000	90,700,000	90,700,000	90,700,000	90,700,000	90,700,000	317,450,000
		25~26층	2	397,397,000	512,603,000	-	910,000,000	5,000,000	40,500,000	91,000,000	91,000,000	91,000,000	91,000,000	91,000,000	91,000,000	318,500,000
		27~29층	2	399,580,500	515,419,500	-	915,000,000	5,000,000	40,750,000	91,500,000	91,500,000	91,500,000	91,500,000	91,500,000	91,500,000	320,250,000

■ 공통 유의 사항

- 상기 공급금액은 분양가 자율화에 따라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향별 등으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구법상의 등록세 통합)가 미포함 된 가격입니다.(추후 취득세 산정 시 발코니확장비용과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비용이 합산되어 산정됨)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확장 비용과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비용이 미포함된 가격이며,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분양계약 시 또는 분양계약 이후에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승강기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기타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타공용면적 등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단지 내 상가)은 별도 분양대상으로서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로 산정하고 실별 안목치수는 유상옵션 마감 전 마감내용으로 반영하였으며,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입주중 발급일) 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국경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이어야 함)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 중 50% 공정 시점 이후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며,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중도금대출 납부일정은 당겨지거나 미뤄질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중도금은 사업주체가 알선한 대출취급기관의 대출을 통해 납입할 수 있습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사유(보증제한, 신용불량 등)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중도금 대출취급기관과 관련한 내용은 별도 안내 예정, 중도금대출 알선은 발코니 확장공사 선택세대에 한함)
- 중도금 대출을 원하는 수분양자는 계약체결 후 지정된 대출취급기관과 중도금 대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해야 합니다. (세부적인 대출신청 일정 등은 별도 안내 예정)
- 사업주체가 알선한 대출취급기관의 대출을 통해 중도금을 납입하는 경우 수분양자의 계약체결일 및 사업주체와 대출취급기관 간 협의에 따라 중도금 납입일정이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는 분양대금의 5% 완납 후 중도금대출을 신청할 수 있으나 중도금대출 관련 정부 및 금융기관의 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계약자의 개인사정(신용불량, 대출 한도 초과, 각종 보증서 발급제한 등)등으로 대출 한도가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출 불가 및 축소 등의 사유로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없으며, 계약자의 불이약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고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등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라도, 계약자는 상기 분양대금(미납대금, 연체료 포함)을 납부일정에 따라 계약자의 부담으로 사업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잔금은 사용승인일 이후에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임시사용승인(동별 사용검사 포함)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총 공급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총 공급대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승인일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본 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중도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선납금액에 대하여 공급계약서의 할인율(선납당일 기준)을 적용하여 선납일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할인합니다. (단, 잔금에 대하여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할인하며, 입주지정기간에는 선납할인은 적용하지 않음)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별도로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고, 분양대금 납부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계약자 본인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사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로서,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는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 본 아파트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거주 지역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등(초)본을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주민등록표등(초)본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 지역 및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입주개시 전 특정 일자를 계약자들에게 통보하여 사전방문 및 점검토록 할 예정입니다.
- 입주 시 관리주체가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선수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관리비 선수금을 금원은 관리주체에서 정하고, 이에 따른 징수 및 사용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합니다.
- 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상기 공급금액은 사업주체의 자체심의 결과 주택형별, 층별, 향별 등으로 차등을 두어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분양대금 납부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하여 불이익이 생길 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 분양가에 계산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 관련 조세는 추후 부과되는 실과세 금액을 입주자 잔금 납부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의 지번(공급위치), 단지 명칭, 동 표시, 외부 색채와 계획, 조경시설물 등이 관계기관 심의 및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 및 판매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변경된 분양 및 판매조건은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분양자는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구조물 등 제반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 세대 내 제공되는 홈네트워크(또는 홈오트메이션)의 기능이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주차공간의 경우 인접 구조물로 인해 승하차 시 불편할 수 있습니다.
- 건축허가 도면의 안목치수는 기본 마감재가 반영된 수치로 싱크대, 가구 등과 인테리어 마감재 설치 두께가 미반영된 수치로 입주 시 실제 측정 치수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인근에 상가건물, 다세대주택, 학원 등이 위치해 있으며, 근처에 모텔 등 비선호시설 및 혐오시설이 위치해있을 수 있으니, 분양계약 체결 전 현장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의 주변지역에 주상복합 등 개발사업이 예정되어 있으며, 향후 해당 개발사업으로 인해 일조권, 조망권, 소음, 분진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제기는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의 명칭(브랜드네임, 팻네임 및 관련 BI 이미지 등 포함) 및 상품개선 등은 사업진행 중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 시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동·호수, 지하층(주동·주차장)의 표기 등 역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분양홍보물, CG, 단지모형 등에 표현된 주동 및 부대시설의 형태, 옥상 옥탑부, 창호 형태, 측벽 디자인, 외부 색채, 외벽 로고 사인, 외벽 마감, 각종 시설물 등의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인허가 과정, 법규 현황,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따른 시공성 개선, 상품 품질 및 디자인 개선, 시공사의 디자인 매뉴얼 변경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주민공동시설 등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2026.04.10.(금))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 중도금 대출 안내

-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 시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 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금융관련 정부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 금융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사업주체의 중도금 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함)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건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계약자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대출취급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나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 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한 대출취급기관에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는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금융관련 정부정책, 대출 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등으로 대출조건이 각 세대별, 각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최종적으로 중도금 대출 실행이 불가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중도금 대출 불가 및 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고 이와 관련된 책임을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부담하지 않습니다.(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 가능 여부 반드시 확인)
- 사업주체가 알선하여 지정하는 대출금융기관에서 대출 진행 시 중도금 대출에 대한 이자는 “중도금 이자후불제” 조건으로 전체 공급대금의 60% 범위 내에서 시행할 예정이며, 중도금 대출 이자는 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할 월상환 대출이자를 분양계약의 정상적 이행조건 하에 사업주체가 대신 납부하고, 입주 시 사업주체에게 지정한 기일 내에 대납 이자를 일시 상환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의 입주지정일이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경우에도 중도금 대출이자는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사업주체가 우선 납부하며,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하지 않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 그에 대한 이자는 계약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이자후불제 조건에 대한 요구를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 알선은 발코니 확장 옵션을 선택한 계약자에 한하여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 대출금융기관과의 중도금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금융기관에 중도금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중도금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 초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될 수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별도로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됩니다.)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 시 사업주체 등에게 어떠한 형태의 보상을 일체 요구할 수 없습니다. 분양대금 미납부 시 공급계약서 조항에 따라 연체료 발생, 계약해제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계약해제 시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대출 시 금융기관,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중도금 대출 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총 분양대금의 5%)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계약금 일부 미납 시에는 중도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 중도금대출 가능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사업주체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협약은행과 중도금 대출 약정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라 하더라도 중도금 대출실행 이전에 본인의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대출이 불가능하게 된 계약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취급(보증) 수수료(집단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 초과, 주택도시보증공사(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 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별도로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됩니다.)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 중단 요구로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해제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인하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특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 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대납하던 중도금대출이자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적격대출 관련 중도금 대출 신청 안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은행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대출 전환 가능여부,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 대출조건 등은 대출은행의 조건에 따르기로 합니다.
- 중도금 및 잔금의 선납할인율 및 연체이자자는 공급계약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분양권 전매 요청 시 사업주체 및 대출 취급 기관은 양수인의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대출 취급 기관 또는 사업주체의 판단에 따라 양수인이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분양권 전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 중도금 대출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2026.04.10.(금))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안내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	수협은행	1130-0064-7832	(주)한국토지신탁	입금 시 동·호수, 계약자명 필히 기재요망 ex)101동201호 홍길동 → 1010201홍길동

[상기 지정된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지정된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에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는 발코니 확장비 및 추가 선택품목 납부계좌와 상이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견본주택에서 일체의 현금 및 수표 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 101동 1605호 계약자 → '1011605홍길동' / 103동 602호 계약자 → '1030602홍길동')
- 계약체결 시 무통장 입금증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무통장 입금증은 분양대금 납부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타인 명의 등 계약금 납부 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 문제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당첨 동·호수의 공급대금 확인 후 입금하시기 바라며, 계좌 오류, 착오납입 등에 따른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본 공급계약과 관련된 분양대금은 반드시 상기에 명시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고, 그 외의 방법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분양대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무통장 입금자 중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을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 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발코니 확장 계약은 아파트 계약 시 동시에 진행 할 예정이며,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계약은 추후 정해진 일정에 별도 진행할 예정이오니, 이점 참고하시어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계약 일정은 계약자에게 별도 통보할 예정이며, 타입별, 품목별 가격이 상이 하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발코니확장 공사

▪ 발코니확장 공사금액

(단위 : 원, VAT포함)

약식표기	발코니 확장 공사비	계약금(10%)	잔금(90%)
		계약시	입주시
84B	22,000,000	2,200,000	19,800,000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발코니 확장 공사비	수협은행	1130-0064-7847	(주)한국토지신탁	입금 시 동·호수, 계약자명 필히 기재요망 ex)101동201호 홍길동 → 1010201홍길동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발코니확장 공사비는 인정하지 않으며 아파트 분양대금 입금계좌와 상이함으로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 계약금 납부 : 계약시 아래 계좌 입금 후 입금증 견본주택 제출[견본주택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 수납 불가/ 신용카드 결제 불가]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시 사업주체에서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람. (예시 - 101동 1605호 계약자 → '1011605홍길동' / 103동 602호 계약자 → '1030602홍길동')
 • 상기 발코니확장 공사비는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상기 발코니확장 공사비는 확장 시 총 공사금액으로 추후 사업 진행 일정에 따라 계약금, 잔금 순으로 분할납부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확장 비용은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확장 공사비 공급금액은 확장으로 인한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발코니 확장 옵션 미선택 세대의 경우, 향후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계약이 불가능합니다.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의 금액 및 물품 등 관련 세부 사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2026.04.10.(금))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

5	청약신청 및 당첨자 발표 안내
---	------------------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무순위 → 주택명 및 주택형 선택 → 유의사항 및 청약자격 확인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발표 서비스

청약홈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6.05.29.(금)~2026.06.07.(일) (10일간)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문자	- 제공일시 : 2026.05.29.(금)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 당첨자 발표 안내 문자에는 스미싱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링크(URL)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링크(URL) 또는 전화 번호는 절대 누르지 않는 등 유사한 스미싱 문자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당첨자(예비입주자) 서류 제출 및 계약 안내

■ 당첨자(예비입주자)제출 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년 12월 21일 이후 발급인 경우 “여권정보증명서” 추가 포함) 등 ※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및 국내거소사실증명서 ※ 모바일 신분증 불가 (실물 지참 필수)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본인 발급용에 한함(용도: 아파트 계약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인터넷발급용 인감증명서 제3자 대리인(위임인) 계약 불가 ※ 인터넷발급용 인감증명서의 제출의 경우, 발급용도는 ‘계약 및 사업신청’ → 제출처는 ‘문수로 라티에르 673 공급계약’을 필수 입력 후 발급 분에 한해 인정
	○		인감도장	본인	• 인감증명서상의 인장대조 확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계약 시 서명으로 대체 ※ 본인 서명 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인(위임인) 계약 불가
	○		주민등록표등본(전체)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 하여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모든 정보 표기 형태로 발급(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모든 정보 표기 형태로 발급(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공급신청자와의 관계)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원	본인	•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에 따라 거주기간을 정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 기록대조일을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 1961년 이전 출생자는 1961.1.1.부터
		○	주민등록표등본(전체)	배우자	• 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기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발급사항 참고하여 ‘전체 발급’으로 발급
해외근로자 (단신부임)		○	해외체류 관련 증빙서류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본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8항에 의거 공급신청자가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생업 종사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첨부 - 국내기업·기관소속에 소속되어 해외에 파견된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및 출장명령서, 재직증명서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근로 관련 서류, 취업·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반드시 제출) :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 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사정 불인정
		○	출입국사실증명원	세대원 및 미성년자녀	• 세대원 및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은 미성년자녀 전원의 해외체류 유무확인 ※제출대상자의 출생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개명한 경우, 개명한 시점에 따라 개명전 출입국사실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
제3자 대리인 신청 시 추가사항	○		인감증명서	청약자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대리 신청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불가), ‘본인 발급용’에 한함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인터넷발급용 인감증명서 제3자 대리인(위임인) 계약 불가
	○		인감도장	청약자	• 인감증명서상의 인장대조 확인
	○		위임장	대리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계약 시 서명으로 대체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인(위임인) 계약 불가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위임장 견본주택에 비치
	○		대리인신분증, 인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년 12월 21일 이후 발급인 경우 “여권정보증명서” 추가 포함) 등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및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서 ※ 모바일 신분증 불가 (실물 지참 필수)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해당주택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민원회신,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서 등 • “소형·저가주택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건축물대장등본, 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미분양 주택 확인 서류, 당첨사실 무효 확인서 등)
		○	기타 소명 서류	해당주택	• 해당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인정 서류

■ 당첨자 계약 체결

- 계약 체결 일시 : 2026.06.04.(목) 10:00~16:00

- 계약 체결 시 구비 서류 (금회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5.21.) 이후 발급분에 한함)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해당자)			

공통서류	○		계약금 무통장입금 영수증	-	• 건본주택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 수납 불가
	○		당첨유형별 당첨자 자격검증서류일체	본인	• 당첨자 자격검증서류 제출기간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추가 개별통지서류	본인	• 기타 사업주체가 당첨자격 적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요구하는 서류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년 12월 21일 이후 발급인 경우 “여권정보증명서” 추가 포함) 등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및 국내거소사실증명서 ※ 모바일 신분증 불가 (실물 지참 필수)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본인 발급용에 한함(용도: 아파트 계약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인터넷발급용 인감증명서 제3자 대리인(위임인) 계약 불가 ※ 인터넷발급용 인감증명서의 제출의 경우, 발급용도는 ‘계약 및 사업신청’ → 제출처는 ‘문수로 라티에르 673 공급계약’을 필수 입력 후 발급 분에 한해 인정
	○		전자수입인지(종이문서용)	본인	• 사본 제출 (원본은 수분양자가 보관하는 공급계약서와 같이 보관) • 수입인지 세액 : 1억 이상 ~ 10억원 이하 15만원 / 10억 초과 35만원 (사업주체와 균등 부담)
제3자 대리인 계약시	○		인감증명서	청약자	• 용도 : 아파트 계약위임용, 단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인감도장	청약자	•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 시 제출 생략
	○		위임장	청약자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건본주택에 비치
	○		신분증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년 12월 21일 이후 발급인 경우 “여권정보증명서” 추가 포함) 등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및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서 ※ 모바일 신분증 불가 (실물 지참 필수)
	○		인장	대리인	• 서명 또는 도장

■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인지세 납부 안내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 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이므로 분양계약 체결 시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는 공급계약체결 시점에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정부수입인지 형태로 연대하여 균등(각각 50%)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부동산 분양 계약시 공급계약서, 발코니확장계약서,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계약서를 작성 후 각각 인지세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정부수입인지는 취급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지 사이트(<https://www.e-revenuestamp.or.kr>)에서 발급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소비세과 (☎126)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입처 - 오프라인 : 우체국, 은행_방문 구입 / 온라인 : 전자수입인지(<https://www.e-revenuestamp.or.kr>)_전자수입인지 구입 후 출력

※ 구매금액

기재금액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세액(균등납부)	2만원	4만원	7만원	15만원	35만원
사업주체 부담액	1만원	2만원	3만 5천원	7만 5천원	17만 5천원
분양계약자 부담액	1만원	2만원	3만 5천원	7만 5천원	17만 5천원

- 계약자 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인지 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가산세 등)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정부수입인지는 소유권 이전등기 시 필수 제출서류로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하며, 인지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분양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부동산등기와 무관하게 중간 분양권 전매(최초 분양계약자와 소유권이전등기 시 최종 매수자까지)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단, 사업주체는 최초 분양계약에 한하여 인지세의 1/2을(연대 균등 각각 50% 납부) 부담하나, 최초 분양계약 후의 거래(분양권 전매 포함) 등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부동산 등기(최초 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계약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부동산 거래계약서의 실제거래가격(분양대금+프리미엄)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해당되는 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정부수입인지는 분양권 매매 당사자뿐만 아니라 물건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나 등기 대행하는 법무사도 구매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 정부수입인지는 1회에 한하여 출력되므로 직접출력 시 반드시 프린터 상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발행 불가)

※ 인지세납부 등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자료실(인지세 자주 묻는 상담사례)에서 확인하시거나 세무서(소비담당)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분실했을 경우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계약체결 이후 부적격 당첨, 공급질서 교란행위, 통장매매,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 동·호 배정 및 계약체결

- 예비입주자 동·호 배정 및 계약 일정 : 무순위 당첨자 계약체결 이후 잔여세대 발생시 추후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계약 체결 시 구비서류 : 상기 당첨자 계약 체결 구비 서류 참조

- 예비입주자 동·호 배정 및 계약 체결 일시는 현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해당 주택형의 계약 현황 및 예비입주자 계약 진행에 따라 예비입주자 선정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 시 현금 수납은 불가하며, 계약금을 즉시 이체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일 이체 한도 확인).

7 참고사항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 등
주택처분 기준일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문 상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계약은 상기 정해진 기간 내 계약하지 않은 경우(계약금 납부 및 계약서 작성 등) 당첨포기로 간주함을 분명히 인지하고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본 무순위 입주자모집공고는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청약으로 청약 당첨(예비입주자 선정 포함) 시 당첨자로 명단관리 되지 않아 재당첨 제한 등 제한을 받지 않으나, 2018.12.11.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본 아파트의 무순위 입주자로 선정되어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향후 청약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접수일시 경과 후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습니다.
(당첨 및 계약 임의 해지 시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공급계약 체결 후 잔금 납부 전 취소시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몰취됩니다.
- 공급계약 체결은 선정된 당첨자(예비입주자) 명의로만 가능하고 공동명의로는 불가합니다.
- 청약 전 반드시 현장 및 주변 여건, 단지 여건 등을 확인 후 청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분양형(차입형) 토지신탁

- 본 주택은 「신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신탁을 원인으로 한 신탁재산으로 “위탁자” (주)구전개발과 “수탁자” (주)한국토지신탁이 2024년 12월 27일자로 체결한 분양형 토지신탁계약 및 2025년 03월 06일자로 체결한 분양형 토지신탁(변경)계약 내용에 따라 공급되는 것입니다.
- 본 분양(공급)은 위탁자 (주)구전개발과 수탁자(신탁회사) (주)한국토지신탁 사이에 체결된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에 근거하여 수탁자인 (주)한국토지신탁이 매도자의 지위를 가지는 자로서, 신탁재산 및 분양형 토지신탁의 업무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부담하며 (주)한국토지신탁과 (주)구전개발 사이의 신탁계약이 종료(신탁목적의 달성, 신탁기간의 만료 등 신탁계약에서 정한 종료사유의 발생, 신탁계약의 해지 등을 의미함)되는 경우, 본 공동주택에 대한 분양계약 관련 (주)한국토지신탁의 분양계약자에 대한 모든 권리 및 의무는 분양계약의 변경 등 별도의 조치 없이 (주)구전개발로 면책적 포괄 승계되며, “분양계약자(매수인)”는 이에 대하여 동의하고 “위탁자” 및 “수탁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 분양대금이 토지비, 공사비, 대출금상환 등의 지급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구 분	사업주체(신탁사)	위탁자	시공사	분양대행사
회 사 명	(주)한국토지신탁	(주)구전개발	금강종합건설(주)	(주)서인기업
주 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7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약수길 10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현암로 144, 503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529(대치동, 금마빌딩)
법인등록번호	110111-1258220	230111-0339266	110111-1273137	110111-1288938

-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문 상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당사 홈페이지(www.문수로라티에르673.com)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 견본주택 위치 :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1129-13번지
- 분양 문의 : 052-256-8253

